

한림대학교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칙

<목 차>

- 제 1 장 정 보 과 학 대 학 학 생 회
- 제 1 절 집 행 부
- 제 2 장 정 보 과 학 대 학 전 체 학 생 대 표 자 회 의
- 제 3 장 단 과 대 운 영 위 원 회
- 제 4 장 과 학 생 회
- 제 5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
- 제 6 장 재 정
- 제 7 장 선 거
- 제 8 장 징 계
- 제 9 장 회 칙 개 정

(부칙)

한 립 대 학 생 회 칙

<전 문>

한림대학교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선진 인재 양성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의 발현은 대학인들의 자율적인 주인의식과 6월 민주항쟁 및 그 이후에 이어져 온 독재·반독재 투쟁을 계승한 대학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추구 속에서 실천함에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역사적 학문 사상의 습득을 위한 대학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며, 이를 수호함에 적극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전 한림인의 일치된 힘과 뜻으로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세움과 동시에 우리의 자발적인 협의에 따라 한림대학교 학생회칙을 2025년 9월 18일에 전문을 포함하여 이 회칙을 개정한다.

제 1 장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제 1 조 (지위) 단과대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 2 조 (구성) 단과대학생회는 당해 각 단과대학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 3 조 (회장과 부회장)

(1)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2)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를 대표하여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단과대운영위원회,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3) 정보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이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사퇴 및 기타 사정에 의한 탄핵 시에는 보궐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잔임 기간이 150 일 이내일 경우는 각 단과대학생회 집행순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 조 (임기)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다음 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5 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부 모든 간부에 대한 임명 요구권

(2)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단과대운영위원회,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본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으며,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3 일 이내에 공고한다.

(4) 집행부 각 국장 및 부장을 해임하고 이를 새로이 임명할 수 있다.

(5) 임시기구 설치권

(6) 매 학기 개강 30 일 이내에 집행부를 소집한다.

(7) 기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8) 정보과학대학 학생회비 관리 및 예결산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총무국장이 수행한다.

제 6 조 (회칙) 각 단과대학의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권한대행) 단과대학 회장단 궐위시에는 단과대학운영위원중 1 인을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과대학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인준한다.

제 8 조 (권한대행의 임기) 단과대학 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다.

제 9 조 (권한대행의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회장단 업무 및 권한과 동일하다.

제 2 절 집행부

제 10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단위이다.

제 11 조 (구성) 집행부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및 7 개의 각 국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업무 및 권한)

(1)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의 및 단과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2) 집행부장은 단과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7 개의 각 국을 둔다.

1) 총괄기획국 : 본회의 모든 사업 기획 및 진행 총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국 : 본회의 회계 및 각종 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대외협력국 : 본회의 대외교류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복지국 : 본회의 학술, 교양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문화체육국 : 본회의 문화 및 체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국 : 본회의 홍보 및 조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7) 사무국 : 본회의 소식지 및 기관지 발행, 회의록 작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임기) 집행부의 각 국장 및 부장의 임기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2 장 정보 과학 대학 전체 학생 대표 자 회의

제 14 조 (지위)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정보과학대학 소속 전체학생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결기구이며, 정보과학대학 학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한다.

제 15 조 (구성)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국장 3인, 각 학과 학생회장단, 부장단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1)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본회의 이념과 목적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
- ②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총노선 확정
- ③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인준
- ④ 본회의 회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결정
- ⑤ 단운위에서 상정되고 심의한 회칙 개정안 발의
- ⑥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소집 요구권
- ⑦ 기타 학생회가 열리지 못할 시 그 권한 대행

(2)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각 자치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자치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정보과학대학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본회 회칙 해석 적용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시 그 부분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다.

(5) 1 항과 4 항의 권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 (징계) 회칙위반 혹은 본회의 업무수행 및 하자를 야기한 회원에 대하여,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회원에 대하여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대상, 종류 등 징계 전반에 대하여 따로 시행세칙을 둔다.

제 18 조 (탄핵발의권 해임건의권 및 징계건의) 세부사항은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제 15 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 19 조 (의장)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의 의장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부의장은 정보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 20 조 (총회)

- (1)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는 임시총회로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구성원의 1/4, 단운위 구성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혹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시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의장인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3)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의 소집은 소집 3 일 전에 공고한다.

제 21 조 (의결 정족수)

- (1)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소집 요구 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임기)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의장과 의원의 임기는 12 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다음 연도 12 월 수요일 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 (1) 정보과학대학 전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매년 1 학기 개강이후 전학대회 의원직으로 선출 된 이후부터 이다.

제 3 장 단 과 대 학 운 영 위 원 회

제 23 조 (지위)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본회의 상설적인 운영기구이다.

제 24 조 (구성)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과학생회장단(, 과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의장)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이 겸열한다.

제 26 조 (업무 및 권한)

- (1) 정보과학대학 자치기구의 제반사업을 검토 이에 대한 심의 조정권
- (2) 회칙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 (3) 임시기구 설치권
- (4) 정보과학대학 소속 학생회 소집 요구권
- (5)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권

제 27 조 (소집)

- (1) 정기회의 시기는 첫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임시회의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요구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제 28 조 (의결)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과 학 생 회

제 29 조 (지위) 과학생회는 각 과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 30 조 (구성) 과학생회는 당해 각 과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 31 조 (회장과 부회장)

(1) 과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각 과의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2) 과학생회장은 각 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32 조 (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는 각 과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33 조 (회칙) 각 과 학생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칙 및 각 과 학생회칙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제 34 조 (지위) 차기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임명한다.

제 35 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릴 시 비상대책위원회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을 둔다.

제 36 조 (권한대행 및 비상대책위원회)

(1) 차기 년도 회장단 궐위 시 당해 연도 과 학생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소속 학과장 추천서를 1부 제출하여야 한다.

(3)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추천서를 평가하고 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4) 3 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단이 선출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 6 장 재 정

제 37 조 (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여기서 기타 수익금은 주점 수익금을 제외한 바자회,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2) 본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회의 활동이라 함은 본회가 속해 있는 과, 학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을 뜻한다.
- (3)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각 기구 집행부의 집행일로부터 차기년도 집행부의 집행 전까지로 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기준은 1 학기와 2 학기로 구분하다.

제 39 조 (집행)

- (1) 예산의 집행 시에는 영수증 및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지출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각 기구는 단과대학운영원회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예산 인출중지 등의 예산 집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3) 각 과학생회는 매월 마지막 일에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총무국장에게 발생한 지출의 영수증 및 확인증과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회계장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 (결산)

- (1) 본회의 각 기구는 매 학기 행사 일정 전 10 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정보과학대학 학생회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예결산시행세칙) 기타 예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결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2 조 (단과대학운영비)

- (1) 총학생회는 학기별 재학생에 한하여 납부를 받는다.
- (2) 각 과학생회는 정보과학대학 학생회비 납부액 전체의 60%를 각 과 재학생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정보과학대학 학생회로부터 배부 받는다.

제 7 장 선 거

제 43 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 44 조 (선거권) 본회의 선거권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정보과학대학 소속 회원으로 한다.

제 45 조 (피선거권)

- (1) 과학생회장과 부회장 : 본회의 회원으로 4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며 현재 재학 중인 자
- (2) 당해 단과대학운영위원은 차기년도 동직책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46 조 (선거시기)

- (1) 과학생회장단의 선거시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 월중에 실시한다.
- (2)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47 조 (정보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거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정보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정보과학대학 국장 1 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각 학생회 임원 1 인씩으로 구성한다.
- (2) 정보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연도 피선거권이 없다.
- (3) 정보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 완료 후 해체된다.

제 48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림대학교 학과 및 전공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징 계

제 49 조 (징계사항) 본회의 회원이나 각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단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 (1) 회칙을 위반한 경우
- (2) 중요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4) 본회의 회원이나 기구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5)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50 조 (징계방법)

- (1)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학내의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2) 제 49 조에 해당하는 행위자나 기구의 대표자에 한해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교 당국에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제 9 장 회 칙 개 정

제 51 조 (개정 발의)

- (1)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 발의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발의
- (3) 본회 의원 1/20 이상이 발의

제 52 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3 조 (공포) 의결된 개정안은 3 일 이내에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이 개정세칙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과학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례에 따른다.